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180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.

>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

## 1. 개정이유

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('15.7.6.)에 따라 그 시행(공포 후 3개월)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(안 제271조 및 제271조의14)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, 일반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과 3억원으로 설정
- 나.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(안 제271조의2) 자본금 20억원, 전문인력 3인 등 일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,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현행 투자일임·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
- 다.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(안 제271조의9, 제271조의13 등) 사모펀드의 보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펀드 규모에 따라 반기·연간 보고로 완화
- 라.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 (안 제271조의14 등)

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, 기업의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등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

- 마. 해외투자목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(안 제271조의14)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같은 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출자제한 규제 면제
- 바. 거래소 손해배상 충당금 재원 순서 변경(안 제362조) 거래소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충당할 재원의 순서를 위약한 회원의 공동기금, 거래소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,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순으로 함

## 3. 의견제출

-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자산운용과, 02-2156-9898, FAX: 2156-9889, e-mail: asset1234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 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다. 기타 참고사항
- ※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(안)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(http://www.fsc.go.kr → 지식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